

· 관 인 생 략 ·

문 고 부

총무 22410-571 720-3421 1987. 3. 9.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1987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송부

1. 국재 22410-554 ('87. 3. 6)와 관련임.

2. 국유재산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7년도 국유 재산 관리계획을 송부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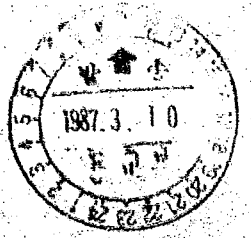
가. 1987년도중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동 계획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하며.

나. 국유재산관리처분 대상재산 목록에 계상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1987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관리처분 기준에 저촉되면 이를 집행 할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1987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1부.

2. 1987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대상재산 목록 1부. 끝.

	쿠상	수	제상	총
일	87.3.10			
부	신			



총무과장 전경

수신처 문1-5, 타1-5-10-18 학1-44(제외12,42), 전2-16(제외13)

198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재 무 부

065

목 차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관리·처분기준	4
1. 매입기준	4
2. 관리환기준	4
3. 매각기준	4
가.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	4
나. 법규에 의한 매각기준	6
다.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7
라. 특별회계재산등의 매각기준	8
4. 교환기준	9
5. 양여기준	10
6.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준	11
제 3 장 보 칙	1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계획은 국유재산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거 1987 년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기준과 취득·관리환 및 처분의 계획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계획에서 "일단의 토지"라 함은 국가이외의 소유토지와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관공재산인 일련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인 토지는 국가이외의 자의 소유토지로 본다.

제 3 조 (대상재산) ① 1987 년도중 국유재산의 취득·관리환 및 처분은 본 계획의 별첨명세에 계상된 범위내에서만 집행한다. 다만, 본 계획에 의하여 총괄청 및 관리청의 자체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 1 항의 관리처분 집행에 있어 제 2 장의 관리처분기준에 저촉되면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제 4 조 (계획의 변경) ① 총괄청은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10 조 및 제 12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 10 조 및 제 12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 5 조, 제 7 조(제 3 항제 5 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획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이 계획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이 계획을 스스로 변경한 경우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계획 집행 실적보고서 그 변경내용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관 리 · 처 분 기 준

제 5 조 (매 입 기 준) ① 국유재산은 1987년도 정부예산에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국유재산중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2. 새로운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3. 국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수 있는 토지
4.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

제 6 조 (관 리 환 기 준) ① 관리청은 타 관리청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산의 교환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단기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② 상이한 회계간의 관리환은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도로, 하천, 함만, 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보 존 부 적 합 재 산 의 매 각 기 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지역에 있어서는 200㎡ 이하, 기타의 시지역에 있어서는 300㎡ 이하,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7-1-1)

2.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7-1-2)

3. 제1호 규모이외의 토지로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m이하로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는 합필이 불가의한 토지. 다만, 최대폭이 5m를 초과하더라도 그 토지가 폐도, 폐하천, 폐쿠거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등 산업시설내에 위치하여 국유토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7-1-3)

4. 건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7-1-4)

5. 국유재산법(법률 제3881호, 1986년 12월 31일 공포)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7-1-5)

②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사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이하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매각할 수 있다.

1. 1981. 4.30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동 건물바다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건물바다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국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항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다.(7-2-1)

2. 81. 4.30 이전부터 대부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토지를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7-2-2)

③기타 국가가 보존 관리함에 적합하지 않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

1. 은닉재산을 국유재산법 제 53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7-3-1)

2. 국유재산법(법률 제 3482호 1981년 12월 31일 공포)부칙 제 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7-3-2)

3. 국가이외의 자의 소유토지상의 건물 및 이 계획에 외거 매각하는 국유토지상에 위치한 건물로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7-3-3)

4. 토지·건물 이외의 재산으로서 용도제한된 재산(7-3-4)

5. 재산의 위치·용도·형태·성격등으로 보아 보존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재산(7-3-5)

제 8 조(법규에 의한 매각기준) 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시행자 또는 당해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 제 2 조제 1항 나목의 공용·공공용의 시설 또는 통호 다목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에 의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8-1-1)

2.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 21 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목적

에 필요한 재산(8-1-2)

3. 택지개발촉진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재산
(8-1-3)

4.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 32 조 또는 제 33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8-1-4)

5.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8-1-5)

6. 수출자유지역실치법 제 7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8-1-6)

7.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65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8-1-7)

8.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 9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8-1-8)

9.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8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8-1-9)

10.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목적외의 처분이 제한 되
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사업 목적을 위하여 매
각이 불가피한 재산(8-1-10)

②제 1 항의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국가행정수행목적상 필요하
거나 보존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없다.

제 9 조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① 공공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9-1-1)

2.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그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9-1-2)

3.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9-1-3)

② 교육·주택·농업·공업등 주요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교육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학교시설 구역내에 위치하는 재산은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9-2-1)
2. 시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촌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취락예정지중 국유지면적이 취락예정지면적의 20% 미만인 경우(9-2-2)
3.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아파트지구내에 위치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9-2-3)
4.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대농지를 10,000㎡이하의 범위안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9-2-4)
5. 공업배치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내에 위치하는 재산으로서 그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의 20% 미만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9-2-5)

제 10 조 (특별회계재산물의 매각기준) 특별회계 또는 기금소관재산은 제 7조 내지 제 9조에 규정하는 매각기준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산재한 소규모 토지를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 또는 시설의 이전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단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2,000㎡이하, 시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0㎡이하인 토지(10-1)
2. 철도사업 특별회계소관 폐시설부지로서 장차 사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10-2)

3. 일단의 면적이 100,000㎡이하인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소관의 임야로서,

가. 국유임야를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 다만, 특별시, 직할시지역에 위치하는 10,000㎡이상, 기타의 시지역에 위치하는 30,000㎡이상인 임야는 제외함.(10-3-가)

나. '81.4.30 이전에 대부분 임야로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10-3-나)

4. 준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 또는 사범시설등 특별회계재산으로서 연도별 이전계획상 매각이 예정된 재산(10-4)

5. 기금소관재산으로서 기금운용 및 증식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10-5)

제 11 조 (매각의 제한)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또는 제 10 조의 매각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타관청)이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으로 이의 사용수익을 신청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케 하는 경우
3. 장래의 국가행정목적의 수행 또는 국유재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 12 조 (교환기준) ① 국가가 직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이외의 토지·건물·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지 못한다.

②권한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종류의 재산이어야 하며, 교환하는 토지의 면적은 일반재산면적이 타방재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교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소관 재산을 국유임야 집단체화를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1. 사권이 설정된 재산
2.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1.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케 하는 경우
2. 장애에 도로, 항만, 공항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의 필요가 있는 경우

제 13 조 (양여기준) ①국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종래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업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계속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13 - 1 - 1)
2.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 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잡종재산이 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2)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그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를 포함)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13-1-3)
4. 국유재산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가 불가피한 경우(13-1-4)

②국유재산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국가이외의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토지 또는 매립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매립한 토지를 국가가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소유권등기를 필한 재산(13-2-1)
2. 국유재산법 제 53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부동산을 발견 신고하여 국가로 귀속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의 30%범위안에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13-2-2)

제 14 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준) ①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을 다른 관리청이 직접 공용·공공용등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소관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우선하여 다른 관리청에 관리환 또는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②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중인 재산을 다른 관리청이 직접 공용·공공용등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소관관리청은 사용

수익허가의 철회 또는 대부계약을 취소한 후 다른 관리청에 관리환 또는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 수익허가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1.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대부는 그 설치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⑤국유재산법 제 40조제 1항의 단서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할납부중인 재산으로서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대금을 납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건축을 전제로 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 15 조 (총괄청의 조정) ①제 2장의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중 그 기본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총괄청이 조정할 수 있다.

②별첨대상재산 명세중 당해관리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 및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총괄청이 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우선적 관리환) 관리청은 이 계획에서 처분대상으로 계상된 재산
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
하여 당해 재산을 우선적으로 관리환 받을 수 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인사 01112-671

731-6224

'87. 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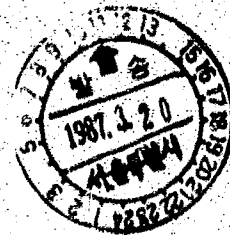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공무 국외 여행 업무처리지침 강조 시달

1. 국외여행으로 인한 외화사용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근감질약의 실천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게 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니,

2. 직장교육시간등을 이용하여 본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이행에 착오없도록 할것.

첨부 : 1. 공무 국외 여행 업무처리지침 1부. 끝.



연	계	공공	AAH	결	사무	장
수	일	187.3.27	187.3.27	(공)	사무	장
사	비	사무	사무			

서울특별시

(부시장 전 결)

수신처 : 서과1-64, 서구1-17, 서사1-59, 서보1-17.

공무 국외 여행 입부 처리 지침

목 적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억제
외화사용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근검.절약을 숭신수병하여 실천함.

기본방침

- 연례적이고 예측가능한 출장은 사전 심사를 통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국외여행에 대한 우리시의 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함.
- 국외여행의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여행성과를 제고함.

세부지침

1. 국외 여행 계획에 대한 사전 심사 실시

가. 단순시찰, 연례적 성격의 여행

단순시찰, 단체여행등 각 기관 사업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여행에 대하여는 여행자 선정, 방문기관통과의 협조전에 계획단계
에서 미리 자체통제부서인 인사과장과 협의후 총무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함.

- 10명 이상의 단체여행
-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상호 방문
- 기타 유공자 포상, 일정직종 근무자 사기양양등을 목적으로
각급기관에 인원을 배정하여 시행하는 견학, 방문, 시찰적 성격
의 단순 연수

나. 계약에 의한 여행

- (1) 각종 용역계약, 외자구매계약등에 의거 시행하는 계약자부담 해외연수도 사실상 시비부담인 점을 감안 적정규모로 최소화하여 시행할것.
- (2) 각 수요부서(조달청의회 계약은 조달청에서)에서는 앞으로 체결하는 각종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인사과장 경우 총무처장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과 협조하여 추진할것.

2. 여행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

가. 자료수집, 업무협의등을 이유로 한 해외여행

- 당면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불인정

나. 세미나, 심포지움등 각종 회의 참가

- 순수하게 주최측에서 경비를 지원 초청하는 경우의외는 회의의 규모성격, 내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다. 사설단체 주관 단체여행

- 각종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시행하는 견학,시찰 또는 긴요한 과제없이 1-2일간 열리는 세미나등 사설단체 주관 단체여행은 불인정함.

타. 기타 각종대회 참관, 전지훈련등

-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그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 해외여행은 자체 심사과정에서 엄격히 제한

마. 초청경위

- 초청에 의한 여행은 반드시 시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은 업무에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 여행기간 목적지 선정의 최소화

가. 여행기간 및 목적지는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하되, 여행기간은 10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목적지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가로 하며 불필요한 경유지는 인정하지 않음.

나. 여행일정에는 구체적으로 일정별 수행임무가 있어야 함.

다. 특히, 여행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초과 사유서" (소속장 확인)를 반드시 첨부 할것.

4. 여행자 선정 첩저

- 담당직무, 직급등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함.
- 수행원의 대동을 지양함.
- 2인이상 출장시에는 개인별 수행 임무내역을 제출할것.

5. 여행경비의 절감

- 여행경비는 시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산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지양함.
- 항공운임 산출시 반드시 항공운임 증명서(GTR운임)에 의할것이며 시장단수행시를 제외하고는 1등 탑승을 억제함.
- 시비부담 여행은 반드시 기획관리실장의 합의를 득할것

6. 여행자 사후관리 첩저

가. 귀국보고 및 수립 자료 활용.

(1) 관계기관 제출

- 여행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귀국보고서 5부와 시장(시정개발담당관실을 비롯 각부서자료요청사항,서울시보원고,견문보고서)

및 총무처장관(정부행정자료실)이 부과한 수집자료 각2부및 출장
복명서 사본1부를 인사과장 참조 제출하여야 함.

- 인사과장은 제출받은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등을 국무총리실(행
정조정실장), 국가안전기획부(제3국장), 정부기록보존소, 시자
료실및 자료요구요청부서등에 송부
- 귀국보고서 및 자료 미제출자는 향후 국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

(2) 수집자료의 보관활용

- 시정개발담당관은 출장복명서, 귀국보고서, 자체 수집자료등을 공
동관리 활용 하여야 함. (상. 하반기에 귀국보고의 개최)
- 공보관은 시보에 해외여행자의 원고 게재
- 종합민원실장은 해외여행자의 건문보고사항 활용
- 자료 요청부서에서는 수집자료 비치 활용

나. 국외 출장에 대한 심사분석

- 각 부서별로 심사분석 전년에 비하여 출국인원및 의화사용이 절감
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다음분기 국외여행심사 요청시 이를 반영함
으로써 국외여행을 제한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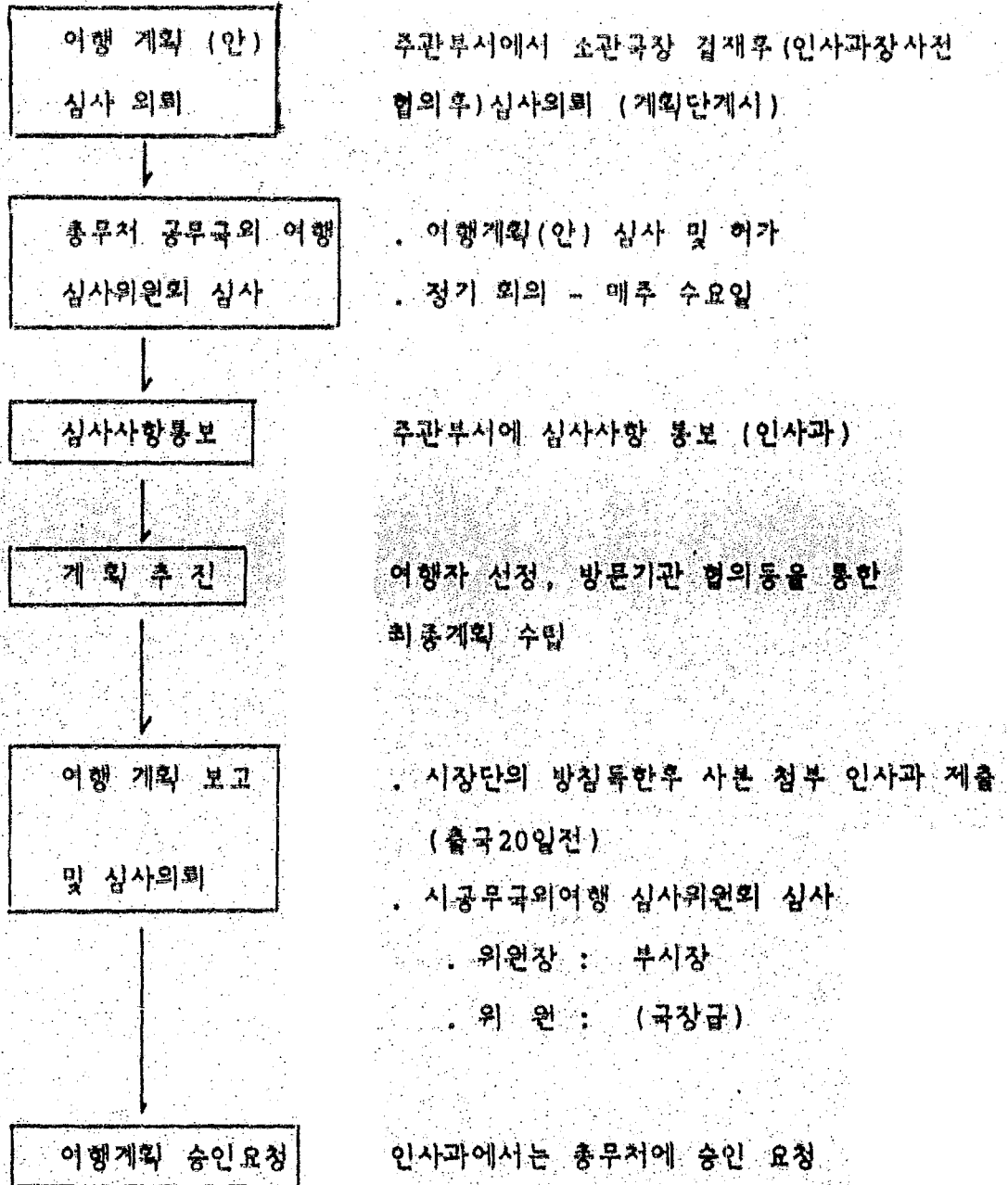
다. 여행자의 보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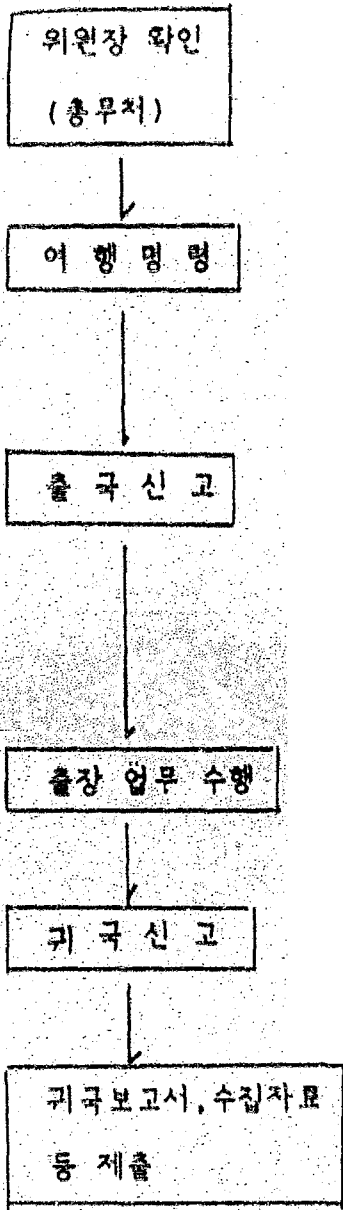
- 산하 각 소속장은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충분히 활용될수 있도록 상당기간 관련
직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함.

7. 선물반입억제및 선물 신고 철저

- 인사022755-126(87.1.19)호 참조

1. 사전 심사 대상 일 경우





- 최종계획확인 (위원회 심사생략, 위원장 전결)
- 외무부 및 주무부서 통보 역권 발급 및 출장조치

- 3급이상 공무원 및 공사사장 : 시장
- 4급이하 공무원 및 공사임직원 : 부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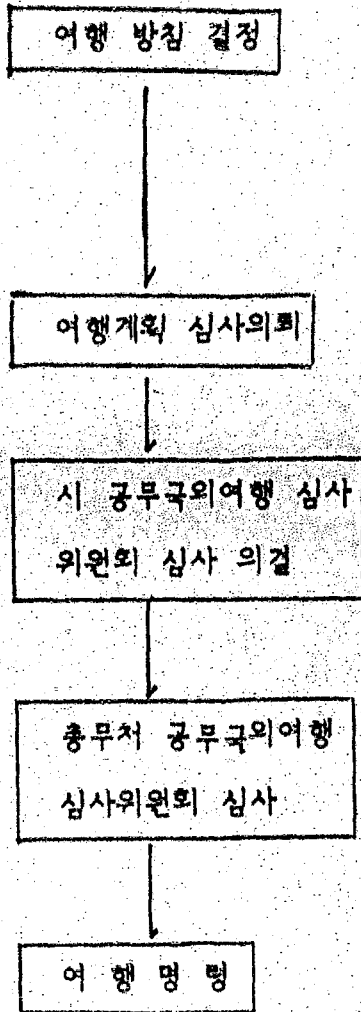
- 출국 2일전까지
- 4급이상 : 시장, 부시장
- 5급이하 : 소속부서장 및 내무국장

출장기간중 해외여행자 수칙 준수

귀국후 즉시 (출국신고서와 동일)

- 귀국후 20일 이내 출장복명서 제출 (소속부서)
- 귀국후 30일 이내 귀국보고서, 수집자료, 시보원고, 건문보고 제출 (인사과 및 공보관실, 종합민원실, 시장개발담당관실)

2. 사전 심사 대상 이외의 경우



○ 인사과에 사전 실무협의후

주관 부서에서 여행계획 방침 결정 (시장결재)
 단, 공사임직원의 경우는 반드시 주관과, 국장
 경유

방침사본 및 구비서류 첨부 심사의뢰 (출국20일전)

지방공사임직원은 시 자체심사만으로 여행
 명령사항 결정

정기회의 - 매주 수요일

. 3급이상 공무원및 공사사장 : 시장

. 4급 이하 공무원및 공사임직원 : 부서장

출국 신고

출국 2일전까지

- 4급이상 : 시장, 부시장
- 5급이하 : 소속부서장 및 내무국장

출장업무수행

출장기간중 해외 여행자 수칙 준수

귀국 신고

귀국후 즉시 (출국 신고시와 동일)

귀국보고서, 수집자료
등 제출

- 귀국후 20일 이내 출장복명서 제출 (소속부서)
- 귀국후 30일 이내 귀국보고서, 수집자료, 시보원고
건론보고 제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인사01112-1085(86.4.21) 호관련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지침 참조